

2022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

기술상용화 지원사업(전문가 진단형) 공고

단기간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상용화 단계까지 제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R&D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17일
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모집 개요

- 지원대상: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
※ 지원분야의 제한은 없으나, 단순 디자인 개선 등은 제외
- 지원규모: 총 25억원 (과제당 최대 5천만원/6개월)
- 지원기준: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% 부담
- 공모유형: 자유공모
- 모집기간: 2022. 03. 17. (목) ~ 2022. 04. 21. (목)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<http://seoul.rnbd.kr>)

필독 사항

-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, 과제내용 작성 요망
- 민간부담금 현금은 시지원금의 10%
- 선정 후 **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** 제출 필수
-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
- 선정 전·후 **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**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**[붙임]의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** 확인 필수

1. 사업 개요

■ 사업목적

-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성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
- 개방형 선정방식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술 및 융합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개선 및 기술의 상용화 지원

■ 지원대상: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(기술개발 역량 보유)

■ 지원규모: 총 25억원 (과제당 최대 5천만원/6개월)

■ 지원분야: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[붙임]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)

- 단,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

■ 지원내용

- 기술(제품)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·시제품 제작, 기능개선, 성능·신뢰성 시험,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지원

2. 신청 자격

■ 주관기관의 자격

-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**중소기업**
 - ※ 본점 또는 지점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
 - ※ 사업자등록증 상,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

■ 과제(부문)책임자의 자격

- 과제책임자 :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부문책임자 :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, 전임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, 연구자 등

※ 참여기관 및 과제(부문)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'서울시산학협력사업 운영요령(2021. 7. 1. 개정)' 참고

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
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[붙임1]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

3. 지원원칙 및 기준

▣ 기본 원칙

-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
 - 해당 공모사업 내,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
 -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, 장비구입·시설 구축 등 지양
 -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,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
 - 인건비, 시작품·시제품 제작, 안전성·유효성 평가,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&D자금 지원
- ※ 사업비 편성 기준은 '서울시산학협력사업 운영규정(221.7.1. 개정)' 참고
-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
 - 협약체결 시,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- 보증기간 : 사업기간+6개월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)
- ※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

▣ 지원 기준

-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구성
 - 시 지원금 : 과제당 최대 5천만원
- ※ 과제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(조정) 지급
- 민간부담금 : 시지원금의 10% 부담

구분	시지원금(가)	민간부담금 현금(나)	총사업비(가)+(나)
(예시)	5,000만원	500만원	5,500만원

4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
■ 추진절차

공고 및 접수 (3~4월)	사전검토 (4월)	선정평가 (4~6월)	선정평가결과 (7월)	심의위원회 (8월)
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	과제계획서 검토 (신청자격 등)	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	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	평가결과 심의·확정
SBA	SBA	SBA	SBA	서울특별시

※ 상기 평가,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■ 선정기준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기술성 평가 (서류평가)	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	40
	기술개발의 타당성	40
	기술개발 추진능력	20
시장성 평가 (발표평가)	사업화 능력	20
	사업화 타당성	40
	시장진입 가능성	40

■ 평가방법

○ 선정평가는 서류·발표평가의 단계별 평가 진행

- (서류평가) 분야별 산·학·연 기술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의 기술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과제 선정

$$\text{서류평가 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$

- (발표평가)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·학·연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

$$\text{발표평가 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$$

※ 코로나-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(온라인)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(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)

※ 비대면(온라인) 평가 시,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**발표 동영상 제출**을 요청할 수 있음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■ 신청기간

- 온라인접수 : 2022. 3. 17.(목) ~ 4. 21.(목) 18시까지

※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→로그인→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 ※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
 ※ 과제신청 주관기관 설문조사 작성 필수

■ 신청방법 : SBA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seoul.rmbd.kr/>) 온라인 접수

- 온라인 신청 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
서류 작성	회원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	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	온라인 설문조사	접수완료 확인

1단계 서류작성 :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

- 공고문 확인 : SBA R&D지원센터 - 알림마당 - 사업공고 (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)
- 과제계획서 작성 :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
- ※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

2단계 회원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: SBA R&D지원센터에서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

-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으로 연동되는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진행
- ※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 사용한 계정으로 과제 신청·접수 가능
- ※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·접수되므로,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
- (SBA R&D지원사업 신규 참가기업일 경우)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계정으로 SBA R&D지원센터 로그인 후, 좌측 메뉴 ‘기관정보’ → 우측 상단 ‘새로입력’에서 참여기관 정보 등록

3단계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: 기업 및 과제정보 입력, 과제계획서 및 첨부파일 업로드

-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계정으로 SBA R&D지원센터 로그인
- SBA R&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‘종합관리시스템’ 클릭 하여 접속
-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- **2022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(전문가 진단형)** 클릭
- 기본정보, 과제분류, 참여기관, 참여자,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
- 첨부파일란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
- ※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, [저장] 후 추가 업로드 가능(압축파일 업로드 금지)
- 최종 업로드 후,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
- ※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여부 확인 요망,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(제출 후 수정 불가)

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

-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모두 하기의 설문조사 작성 필수
- <https://forms.gle/d2iG6SQ9LMSxUV4w5> ※ 설문조사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

5단계 접수완료 확인

- 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‘과제관리’ → ‘접수과제’에서 ‘접수완료’ 상태 확인

○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

구분	서 식 명	대상	제출형태
계획서 [필수]	과제계획서 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	주관기관	한글(HWP)/ 스캔(PDF) 온라인 업로드
붙임 [필수]	[붙임1]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	주관기관	
	[붙임2]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	주관기관	
	[붙임3] 과제(부과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자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자원사업 현황	주관기관	
	사업자등록증(명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에 한하여)	주관기관	
붙임 [해당시]	[붙임4] 연구장바·시설 구입 계획서	주관기관	
	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	주관기관	
	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	주관기관	
온라인 [필수]	설문조사(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)	주관기관	제출 후 팝업/링크

※ 과제계획서 파일 이름은 ‘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’로 함

※ 해당 증빙서류 이름은 ‘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’로 함

6.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- ③ 과제 신청 관계자(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-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’ 적용
-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(<https://forms.gle/d2iG6SQ9LMSxUV4w5>)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
-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⑦ [붙임1] 지원제외대상, [붙임2] 우대가점 목록 **필독**

■ 문의처

- 담당자 : 서울산업진흥원 R&D사업팀 김민재 선임(mjkim47@sba.seoul.kr)
(T: 02-2222-3833)

[붙임1] 지원제외 대상

- ※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※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

① 접수서류

-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(설문조사 포함)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※ 서울형 R&D 지원사업 5년 간 참여제한

② 중복성

[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]

-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&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
- ※ 단,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

[과제 기준]

- 접수과제의 내용(기술개발 목표, 방법 등)이 타 사업·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·제작·생산·판매중인 제품·서비스 경우
- ※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개별 확인

③ 참여율

- 과제(부문)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- ※ 과제(부문)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
④ 의무사항

-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 등이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
⑤ 신용 및 기업 상태

- 기업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- ㉞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
- ㉟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- 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㊲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

< 관련 문의처 >

- 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 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채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
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[붙임2] 우대가점 목록

가점기준 :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(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)

- 주관기관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(중복 가능)(각 1점)
☞ 증빙서류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확인서(예비사회적기업 불인정)
- '서울형 R&D 지원사업'에서 최근 3년 이내 '우수'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서울형R&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상 '성공(우수)' 표기 과제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의 기업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상장, 하이서울브랜드, 서울어워드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5천만원 이상 직접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: 투자 계약서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 ① 직접수출: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② 간접수출: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-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분야(비대면, 방역 관련 기술 등)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
-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('20년 대비 '21년 비교)(1점)
☞ 증빙서류 ①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
② 증빙서류: 매출감소(2개년도 재무제표 등), 인력감소(2개년도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), 계약취소(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)

※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
※ 우대가점은 선정평가 중 발표평가 단계의 종합평점에 반영